

2020. 10. 30.(금)

강원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입법 · 정책 동향

- ◇ 제295회 임시회(10.13.~10.22.)시 강원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목록과 의원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드립니다
-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billgangwon16.council.or.kr:8080>

제295회 임시회 의안(조례안) 처리 목록

❖ 총 : 27건(도지사 13, 교육감 1, 의원 13) * 제안자 구분

위 원 회	조례안명	제안자	본 회 의 처리결과 (2020. 10. 22)
기획행정 위 원 회 (10)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대하 의원	수정
	강원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도지사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강원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사회문화 위 원 회 (4)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수철 의원	원안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석 의원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	윤지영 의원	
농림수산 위 원 회 (4)	강원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지영 의원	수정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	함종국 의원	수정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도현 의원	원안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

위 원 회	조례안명	제안자	본 회 의 처리결과 (2020. 10. 22.)
경제건설 위 원 회 (8)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조형연 의원	원안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조성호 의원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형원 의원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신영재 의원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원 의원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호 의원	
교 육 위 원 회 (1)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

《 참고 : 조례 제정절차 등 》

- (지방자치단체 이송)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295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0.10.22.(목)
- (지방자치단체장 조례안 공포)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 재의 요구) : 의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요구 조례안 확정)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조례 효력발생) :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

제29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주대하 의원(예산결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속초1),
- 공동발의: 김준섭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속초2), 신영재 의원(경제건설위원회·국민의힘·홍천1)
신도현 의원(부의장·국민의힘·홍천2), 김규호 의원(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양구),
조형연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인제), 박효동 의원(부의장·더불어민주당·고성),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양양)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지원대상 주민을 기존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4개 지역(영북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홍천군과 양구군 지역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통행료를 영북지역 4개 시·군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1일 1회 왕복에 대해 통행료 전액을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은 승용차, 5.5톤 이하 화물차 및 32인승이하 승합차이며 개인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주대하 의원



김준섭 의원



신영재 의원



신도현 의원



김규호 의원



조형연 의원



박효동 의원



김정중 의원

▣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김수철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화천)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의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강원도 내에 설립된 문화원을 말하며, “강원도 문화원연합회”란 강원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강원도지회를 말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강원도문화원연합회의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김병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4)



강원도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안에서는 도지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등 회계 관련 사항, 공사 및 구매 등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사항, 부동산, 장비, 물품 등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별도 전산시스템의 회계, 후원 등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

- 대표발의:** 윤지영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1)
- 공동발의:**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영월1),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6),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양양), 박윤미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3),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영월2),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국민의힘·비례), 윤석훈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평창1), 장덕수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정선1) 정수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위호진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강릉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이 발의됐다.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강원도 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상담·조사·연구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노인복지시설로 신고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윤지영 의원 김경식 의원 권순성 의원 김정중 의원 박윤미 의원 신명순 의원



심영미 의원 윤석훈 의원 장덕수 의원 정수진 의원 위호진 의원

■ 강원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윤지영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1)
- 공동발의: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영월1),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6),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양양), 박윤미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3),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영월2),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국민의힘·비례), 윤석훈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평창1), 장덕수 의원(사회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정선1) 정수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강원도 내 거주자 중 미혼 농어업인의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강원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지원 대상은 강원도 내 거주자 중 50세 미만이고 사실혼을 포함하여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등을 충족하는 농어업이다. 지원절차는 지원신청을 통해 읍·면·동장에게 대상자 추천을 받은 시장·군수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윤지영 의원



김경식 의원



권순성 의원



김정중 의원



박윤미 의원



신명순 의원



심영미 의원



윤석훈 의원



장덕수 의원



정수진 의원

■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

- 대표발의: 함종국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횡성2)



강원도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이용 및 재활용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재활용산업 촉진 정책과 재원 조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재활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신도현 의원(부의장·국민의힘·홍천2)
- 공동발의: 박효동 의원(부의장·더불어민주당·고성),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영월2), 심상화 의원(기획행정위원회·국민의힘·동해1),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국민의힘·비례), 최재연 의원(교육위원장·국민의힘·철원1), 함종국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횡성2)

강원도 내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써 개정안은 곤충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강원도 곤충종자보급센터”를 “강원도 곤충첨단융복합센터”로 개편하고 그 기능을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도현 의원



박효동 의원



신명순 의원



심상화 의원



심영미 의원



최재연 의원



함종국 의원

▣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대표발의: 조형연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인제)



강원도 교통연수원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됐다. 교통연수원이 수행하는 기능은 운수종사자 교육, 교육자료 연구 및 교재 발간, 도민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그 밖에 강원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수원의 운영을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연수원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 대표발의: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구)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상공인에 대한 육성 지원과 여성·청년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이 발의됐다. “뷰티산업”(Beauty産業)이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또는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개발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뷰티산업제품”이란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기기·물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뷰티산업 창업·기술개발·경영에 관련된 상담 및 교육, 뷰티산업제품 생산 및 브랜드 개발 지원, 뷰티산업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활동 지원, 국내·외 박람회, 기술 경연대회, 전문가 연구 및 포럼 개최 및 참가 지원, 국내·외 인증, 수출 컨소시엄 활성화 및 수출 촉진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김형원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동해2)

■ 공동발의: 김수철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화천)

이병헌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2)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하기 위한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강원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형원 의원



김수철 의원



이병헌 의원

▣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신영재 의원(경제건설위원회·국민의힘·홍천1)
- 공동발의: 함종국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횡성2)
심영섭 의원(농림수산위원회·무소속·강릉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강원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강원도 실수요검증위원회와 강원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강원도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영재 의원

함종국 의원

심영섭 의원

▣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김형원 의원(경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해2)
- 공동발의: 김수철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화천)
박상수 의원(교육위원회·국민의힘·삼척2)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는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일자리대상 수상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일자리대상 인증서 및 현판, 고용환경개선 지원, 기업홍보,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해외시장개척 사업 우대, 「강원도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혜택 등이며 개정안은 수상기업 지원에 노동자 복지증진 지원을 추가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에 따라 세무조사 유예로 개정하였다.



김형원 의원

김수철 의원

박상수 의원

▣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이상호 의원(위원회·국민의힘·태백1)
- 공동발의: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영월1), 김상용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삼척1),
나일주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정선2), 박상수 의원(교육위원회·국민의힘·삼척2)
신영재 의원(경제건설위원회·국민의힘·홍천1)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시·군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시·군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금을 무연탄 활용 및 신산업 연구·기술 개발사업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관리에 있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접수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상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상용 의원

나일주 의원

박상수 의원

신영재 의원